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가 회사내 상주를 하면서 당해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에서 건축공사시 모든 공정의 협력업체 반장에게 안전담당자로 지정, 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 989]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월급여액의 10%이내)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2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대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이어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월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Question 건설업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최초 실시해야 하는 시기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 측정을 언제쯤 받아야 하는지요.

[접수번호 : 5084]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은 업종과 무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측정 시기는 측정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측정시기를 놓쳤다면, 조속히 실시하여 추가적인 법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